APPENDIX 3

SNUAA-USA Bylaws Amendment History

2018 년 6 월 현재

1. 미주 동창회의 목적에 지역사회 봉사를 추가한다 (제 14 차 평의원 회의, 2005. 6).

(Chapter I [Purpose], Article 2, Section [1] of Bylaws)

Community service shall be added to the "Purpose" of our Organization (Adopted at the 14th Assembly of Delegates, May 21st, 2005).

This Amendment shall be deleted because it is considered to be redundant and duplicated to Article 2 (Purposes), (1) 'Charitable and Educational Purposes---' of Bylaws of SNUAA-USA.

2. 모든 전임 미주 동창회장들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제 16 차 평의원 회의, 2007. 5. 19).

(Chapter III, Article 12 [Classes, Numbers, and the Terms of Delegates])

(Section 6 as new addition)

All the past Presidents of SNUAA-USA shall serve the office of Delegates (Adopted at the 16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9th, 2007).

3. 'Fund Management Committee' 를 'Fund Management Committee of Alma Mater' 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 16 차 평의원 회의, 2007. 5. 19).

(Chapter IV, Article 17 [Committees], Section 4)

'Fund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renamed as 'Fund Management Committee of Alma Mater' (Adopted at the 16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9th, 2007).

4.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약간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 16 차 평의원 회의, 2007. 5. 19).

(Chapter IV [Directors], Article 16 [Qualification and Number], Section 2)

The President may have a few 'Executive Directors' with approval at the Assembly of Delegates if he(she) needs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Adopted at the 16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9th, 2007).

5. 총 동창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악 후원회, 장학 위원회, 회칙 위원회, 그리고 포상 위원회 등의 상설 위원회를 총회장 직속 위원회로 한다. 각 위원회의 세칙과 인수인계 세칙 그리고 감사 세칙이 통과되었다 (자세한 세칙은 회의록 참조 요망, 제 17 차 평의원 회의, 2007. 5. 19).

(Chapter III [Delegates of Members], Article 11 [Delegates], Section 2, [o] setting up advisory committee).

Four Standing Committees: US Kwan-Ak Sponsor Committee, Scholarship Committee, Rules and Regulations Committee, and Award Committee were created in order to operate and manage the affairs of SNUAA-USA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Rules and regulations of those four committees, transfer of business and audit were established (Adopted at the 17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9th, 2007).

6. 재미 서울대 동창회'를 '서울대 미주 동창회'로 변경한다. 회보 명칭도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로 변경한다. 지역 동창회의 명칭은 '서울대 ooo 동창회'로 한다 (ooo 는 지역명) (제 17 차 평의원 회의, 2008. 5. 17).

English name of our corporation remains the sam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Inc. (Registered in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June 7th, 2001).

7. 지역 동창회를 구성 할 수 있는 최소 회원이 40 명 이상이어야 하는 현 회칙 규정을 30 명으로 완화한다 (제 17 차 평의원 회의, 2008. 5. 17).

(Chapter1, Article4 [Chapters 4])

To be a Chapter of the Corporation (SNUAA-USA), minimum number of alumni in that local/regional/state SNU alumni association shall be reduced from current 40 alumni to 30 alumni.

8. 미주 동창회는 회장 고문 ('상임이사' Amendment 4 참조), 모교 발전기금 위원장, IT 위원장, 회칙 위원장, 회보 편집 위원장, Brain Network 위원장, 사회 봉사 위원장, 그리고 감사 2 인에게 평의원의 자격을 준다 (제 17 차 평의원 회의, 2008. 5. 17).

Presidential advisers (ref. Amendment 4), chairperson of Funds Management Committee for Alma Mater, of IT Committee, of Bylaws Committee, of Editorial Committee of Newspapers, of Brain Network Committee, of Charity Committee and two auditors shall automatically serve as delegates (Adopted at the 17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7th, 2008).

9. '수석 부회장'의 명칭을 '차기회장'으로 변경한다 (제 17 차 평의원 회의, 2008. 5. 17).

The title of the First Vice President is changed to the President-elect (Adopted at the 17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7th, 2008).

10. 종신 이사회비 $3000 을 기부 하신분들은 종신 평의원으로 대우한다 (제 17 차 평의원 회의, 2008. 5. 17).

Each lifetime director (supporter) who has donated $3000 shall be entitled to serve as a delegate during his/her lifetime (Adopted at the 17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7th, 2008).

11. 위임장은 총회의 성원을 위한 정족수 계산에 사용되지만, 회장 선거나 다른 결정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8 차 평의원 회의, 2009. 5. 16).

(Chapter III [Delegates of Members], Article 14 [Assembly of Delegates], Section 6)

Proxy of any Delegate shall be used only for a quorum of the meeting but have no voting power (Adopted at the 18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8th, 2009).

12. 각 지부의 평의원 수는 지부 동창회의 회원수에 비례하여 지부 동창회와 상의하여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 18 차 평의원 회의, 2009. 6. 16, 참조: 회의록 안건 #11).

(Chapter III [Delegates of Members], Article 12 [Classes, Number, and Terms of Delegates], Section5])

The Number of 'Elected Delegates' from each local Chapter shall be fixed from time to time by the Executive Directors (회장단) with the consultation of local Chapter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members of each Chapter (Adopted at the 18th Assembly of Delegates, cf. # 11, May 16, 2009).

13. 종신이사는 자동으로 평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종신이사로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종신이사들 만이 평의원의 자격으로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며 이들은 정족수에 포함된다 (제 19 차 평의원 회의, 2010.6. 15).

'Life-time Directors created (Adopted at the Assembly of Delegates of May 19th, 2007) shall serve the office of Delegate only when he (she) physically attends the Assembly of Delegates (Adopted at the 19th Assembly of Delegates, June 15th, 2010).

14.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신설과 동시 추천위원회 세칙 통과 시키다 (제 19 차 평의원회의, 2010. 6. 15, 세칙 참조).

(Chapter III [Delegates of Members], Article 11 [Delegates], Section 2, [o]- Setting up advisory committees)

Nominating Committee as standing committee was created and

Rules and Regulations of Nominating Committee for the selection of presidential candidate was established (Adopted at the 19th Assembly of Delegates, June 15th, 2010).

15. 미주 서울대 각 단과대학 동창회장은 평의원회의에 참석시에는 자동적으로 평의원 자격을 갖는다 (제 21 차 평의원회의, 2012. 7. 9).

(Chapter III, Article 12 [Classes, Numbers, and the Terms of Delegates]) (Section 7 as a new addition)

Presidents of Alumni Association of each College of SNU, only when they attend the Assembly of Delegates, shall serve the office of Delegates (Adopted at the 21st Assembly of Delegates, July 9th, 2009).

16. 평의원이 다른 평의원의 위임장을 가져 왔더라도 참석자 본인만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평의원이 아닌 지부동문이 해당 지부 평의원의 위임장을 갖고 회의에 참석시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 참석인원 당 하나의 투표권만 인정). 모든 위임장은 정족수로 사용된다. 종신이사는 본인이 평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평의원 자격을 가지게 되어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불참시에는 위임장은 허용이 안된다 (제 23 차 평의원회의, 2014. 6. 28).

(Chapter III [Delegates of Members], Article 14 [Assembly of Delegates], Section 6)

Regarding Proxy: A Proxy or Proxies shall not be given voting power. But if a regular Member from the same local Chapter with a Proxy attends the Assembly of Delegates, he (she) can vote by Proxy. In any circumstance, only one vote per a person is allowed.

Proxy shall be counted for quorum. The Life-time Director shall serve the office of Delegates only when he (she) physically attends the Assembly of Delegates. Proxy is not allowed when he (she) is absent (Adopted at the 23rd Assembly of Delegates, June 28th, 2014).

17. 현 미주 동창회장의 유고시 승계는 차기회장, 사무총장의 순으로 한다 (제 22 차 평의원 회의, 2013. 6. 22).

(Chapter V, [Officers], Article 26 [Term]

Presidential line of succession upon the incapacity, death, resignation, or removal from office of sitting President follows the order of President-elect and the Secretary General (Adopted at the 22nd Assembly of Delegates, June 22nd, 2013).

18. '미주 관악후원회'의 명칭을 '미주동창회 후원회' 로 변경한다 (제 23 차 평의원 회의, 2014. 6. 28).

'USA-Kwanak Sponsors Committee' is renamed as 'SNUAA-USA Sponsors Committee' (Adopted at the 23rd Assembly of Delegates, June 28th, 2014).

19.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구 100 만불 기금위원회) 세칙이 통과되다 (제 23 차 평의원회의, 2014. 6. 28).

(Chapter4, Article 18 [Fund Management Committe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Fund Management for Alma Mater (SNU Advancement) were passed.

APPENDIX 4

미주 동창회 후원회 세칙 (안)

제 1 조: 목적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지속적인 월간 회보 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본 후원회를 둔다.

제 2 조: 후원이사 구성

1. 본회의 재정에 본 세칙이 규정한 금액 이상을 기여한 회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후원 이사제도를 둔다.

2. 후원이사는 일반 후원이사 및 종신 후원이사로 구분하며, 종신 후원이사는 일반 종신이사, Gold 종신 후원이사, Platinum 종신 후원 이사, 그리고 Diamond 종신 후원 이사로 구분한다.

제 3 조: 후원 이사의 임명

1. 회장은 각 지부 동창회의 추천 및 피 추천자의 희망에 따라 정회원 중에서 후원이사를 위촉하고 각 지부별 할당 이사 수는 정회원 수 및 지부의 수용 능력을 감안 지부 동창회장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위 1 항과 별도로 회장은 각 지부의 추천이 미흡하거나 또는 본회의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정 기여를 희망하는 정회원 중에서 후원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3. 일반 후원이사 수 는 합계 250 명 또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회장은 후원 이사 명단, 변동내용 및 후원이사의 기여금 수입 실적을 매년 평의원 회의에 서면 보고 하고 동창회보에 게재 한다.

제 4 조: 후원 이사 임기

1. 일반 후원 이사의 임기는 1 년이며 위촉 다음해의 평의원회 정기 총회와 함께 동시에 임기가 종료 한다. 다만 해당 지부 동창회 또는 본인의 특별한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임기는 매년 자동적으로 연장하며 후원이사로서의 의무를 계속 이행한다. 그러나 후원이사로서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2. 종신이사의 임기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생존 기간이다.

제 5 조: 후원 이사의 의무 및 권한

1. 일반 후원이사는 위촉과 동시에 본인의 능력에 따라 년 $200 이상, $500 이상, $1,000 이상의 금액을 본회의 재정에 기여해야 한다.

2. 일반 종신이사는 임명과 동시에 $3,000 이상의 일시불을, Gold 종신이사는 임명과 동시에 $10,000 이상을, Platinum 종신이사는 임명과 동시에 $50,000 이상을, Diamond 종신이사는 임명과 동시에 $100,000 이상을 본회의 재정에 기여 하여야 하며, 여타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회장은 위의 1 항 및 2 항에 정한 후원이사의 기여금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평의원 회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후원이사는 위의 기여금액 납부 의무 이외에 후원 이사로서의 여타한 다른 책임 및 의무는 없다.

5. 후원이사는 명예직이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신하여 여하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 6 조: 혜택

1. 후원이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그 종류 및 내용은 회장이 일반 후원이사와 종신 후원이사를 구분하여 결정하되 평의원 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2. 후원이사로서의 혜택은 제 3 자에게 이전 내지 상속할 수 없다.

제 7 조 기금관리

1. 본 세칙 5 조 1 항에 따라 일반 후원 이사가 기여한 금액은 본회의 일반업무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본 세칙 5 조 2 항에 따라 종신 후원 이사가 기여한 금액은 특별계정(SNUAAUSA CENTURY FOUNDATION) 을 설치하여 적립 운영하고, 모금액은 300 만불로 한다.

3. 특별계정의 원금은 평의원 회의가 결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자나 이익금은 평의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현 회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4. 미주 동창회 후원회 (구명칭: 미주 관악 후원회) 의 기금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그 산하에 상임이사회를 둔다.

4-1. 상임이사회는 5 명의 종신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임명하여 평의원의 인준을 받는다.

4-2. 미주동창회 후원회 (구명칭: 미주 관악 후원회) 부회장은 본 회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회' 의 위원장이 되어 본 회장을 보좌 한다.

4-3. 상임이사와 상임이사회 위원장의 임기는 2 년(본회장의 임기와 동일) 이며 연임할 수 있다.

4-4. 상임이사회는 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 특히 재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서류는 영구히 보존한다.

4-5. 본 위원회는 정기 회계 감사를 받으며, 그 외에 회계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의 기록과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5. IRS Audit 을 위하여 영문 번역본을 유지 한다.

제 8 조: 집행

1. 본회의 회장은 미주 동창회 후원회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2. 미주 동창회 후원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 총장의 협조를 구할수 있다.

제 27 차 평의원 회의의 평의원 성원 구성에 관한 안내

제 26 차 평의원 회의 도중 평의원 성원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어 논의가 있었던 바 이와 관련하여 제 27 차 평의원 회의에 앞서 평의원 성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SNUAA-USA Bylaws 와 SNUAA-USA Bylaws Amendment 에서 평의원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SNUAA-USA Bylaws

Chapter III. Delegates of Members

Article 12 (Classes, Number, and Terms of Delegates)

(1) 평의원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각 지부로부터 선출된 평의원 **(Elected Delegates) - [각 지부에 할당된 숫자, Proxy 가능]**

둘째, 각 지부 회장과 차기 회장 혹은 공석일 때 직전 회장 **(Chapter Delegates) - [26 개 지부 52 명, Proxy 가능]**

세째, 명예회장, 회장, 차기 회장 [수석 부회장에서 명칭 변경 (제 17 차 평의원 회의)], 사무총장, 미주 동창회 후원회 [관악후원회에서 명칭변경 (제 23 차 평의원 회의)] 부회장, 직전 사무총장 **(USA Delegates) - [6 명, Proxy 불가]**

(2) 각 지부의 회장과 차기 회장 혹은 공석일 때 직전 회장 (각 지부당 2 명)은 임기동안 자동적으로 평의원으로 봉사한다.

(3) 명예회장, 회장, 차기회장, 사무총장, 미주 동창회 후원회 부회장, 직전 사무총장은 임기동안 자동적으로 평의원으로 봉사한다.

(4) **선출 평의원은** 선출된 해의 7 월 1 일부터 두번째 해의 6 월 30 일까지 **2 년 임기로 봉사한다.**

(5) 평의원은 각 지부의 동문 수에 따라 공정한 비율로 비정기적으로 각 지부의 선출 평의원 수를 결정한다. 적은 수의 동문들로 구성된 지부는 선출 평의원이 할당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항은 제 18 차 평의원 회의에서 수정됩니다. 아래 10. 참조]

SNUAA-USA Bylaws Amendment

2. 모든 전임 미주 동창회장들은 **당연직 평의원 (the office of Delegates)**이 된다 (제 16 차 평의원 회의) - **모든 전임 미주동창회장님 (1 대 - 12 대)**

9. 위임장은 총회의 성원을 위한 정족수 계산에 사용되지만, 회장 선거나 다른 결정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8 차 평의원 회의)

10. **각 지부의 평의원 수는 지부 동창회의 회원수에 비례하여 지부 동창회와 상의하여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 18 차 평의원 회의) - [이전 bylaw 에 따르면 각 지부 평의원 수의 조정은 Article 11(2)(d)와 Article 12(5)에 따라 평의원 회의를 통해 조정해야 했습니다.]

11. 종신이사는 자동으로 평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종신이사로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종신이사들만이 평의원의 자격으로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며 이들은 정족수에 포함된다** (제 19 차 평의원 회의)-**[참석 종신이사 OO 명]**

13. 미주 서울대 각 단과대학 동창회장은 평의원 회의에 참석시에는 자동적으로 평의원 자격을 갖는다 (제 21 차 평의원 회의) - **[참석 단과대학 동창회장 OO 명]**

14. 평의원은 다른 평의원의 위임장을 가져 왔더라도 참석자 본인만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평의원이 아닌 지부동문이 해당 지부 평의원의 위임장을 갖고 회의에 참석시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 참석인원당 하나의 투표권만 인정). 모든 위임장은 정족수로 사용된다. 종신이사는 본인이 평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평의원 자격을 가지게 되어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불참시는 위임장은 허용이 안 된다 (제 23 차 평의원 회의)

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 27 차 평의원 회의 성원은 **선출 평의원 (Elected Delegates) 71 명** (각 지부 개별 통보); **지부 평의원 (Chapter Delegates) 52 명** (각 지부 회장과 차기 회장 혹은 공석일 때 직전 회장); **미주 동창회 평의원 (USA Delegates) 6 명; 전임 회장단 (the office of Delegates) 10 명** 이상 **139 명**과 **당일 회의에 참석하는 종신이사 OO 명과 단과대학 동창회장 OO 명**으로 구성됨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종신이사와 단과대학 동창회장이 선출평의원 혹은 지부평의원일 경우, 선출 평의원 혹은 지부평의원으로 우선 성원 구성되며 평의원이 중복 자격을 가질 경우, 하나의 평의원으로 성원 구성됩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평의원은 한 명당 하나의 투표권만을 가집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언제든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제 14 대 회장단 일동